

의안번호	제 92 호
의결 연월일	201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8년 11월 21일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2
----------	----

발의연월일 : 2018년 11월 21일  
발 의 자 : 박상돈, 박형용, 심기보  
육미선, 이상욱, 최경천,  
임영은

###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 개정 등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하고 불필요한 약어 표기를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문구 개정 (안 제2,3,6조)
  - (현행) “진료·요양” → (개정)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 (현행) “치매상담센터” → (개정) “치매안심센터”
- 나. 불필요한 약어 표기 삭제 (안 제3조)
- 다.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 (안 제7조)
  - (현행) “재위탁” → (개정) “재계약”

### 3. 의안전문 :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2호>
- 라. 협의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마. 비용추계 : 해당 없음

## 충청북도 조례 제 호

###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함으로써” 를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지원함으로써,” 로, “도민” 을 “충청북도민” 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진료·요양 및” 을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으로 한다.

제3조 중 “충청북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 사업” 이라 한다)” 를 “충청북도민의 치매관리 사업” 으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치매상담센터” 를 “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재위탁” 을 “재계약”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함으로써</u>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u>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u>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치매관리법</u> 」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지원함으로써, ----- ----- <u>충청북도민</u>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u>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u> 말한다.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u>치매환자</u> 에 대한 보호·지원 및 <u>치매에 관한</u>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u>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 사업“이라 한다)</u> 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 <u>충청북도민의 치매관리 사업</u> ----- ----- ----- ----- ----- ----- -----.

현행	개정안
<p>제6조(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치매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u>치매상담센터</u>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p> <p>4. ~ 8. (생략)</p>	<p>제6조(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u> ----- -----</p> <p>4. ~ 8. (현행과 같음)</p>
<p>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위탁) ①·② (생략)</p> <p>③ 위탁기간은 계약일 부터 3년 이내로 하되, <u>재위탁</u>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 연장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재계약</u> -----.</p> <p>-----</p> <p>-----</p> <p>-----.</p> <p>④ (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 발췌

### □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 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3.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 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 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7.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이 끝난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끝난 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